법인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15. 1. 9. 2014구합55526, 2012구합20571(병합), 2012구합31854(병합), 2012구합38176(병합), 2012구합41950(병합), 2013구합57716(병합)]

【전문】

- 【원 고】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외 2인)
- 【피고】 남대문세무서장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호철 외 1인)
- 【변론종결】2014. 12. 12.

【주문】

1

- 1. 가.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이 원고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홍콩상하이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제이피모간 증권회사,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제1목록 기재 각 법인세 원천징수세액(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소송불복 금액'란 기재 금액 부분,
- 나.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원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도이치은행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제2목록 기재 각 법인세 원천징수세액(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소송불복 금액'란 기재 금액 부분,
- 다.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이 원고 한국예탁결제원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제3목록 기재 각 법인세 원천징수세액(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소송불복 금액'란 기재 금액 부분을 각 취소한다.
- 2. 가.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① 원고 제이피모간증권회사, 원고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제4목록 기재 법인세분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② 원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제5목록 기재 각 법인세분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행정소송 금액'란 기재 금액 부분, ③ 원고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홍콩상하이은행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제6목록 기재 법인세분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행정소송 금액'란 기재 금액 부분,
- 나.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제6목록 기재 법인 세분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행정소송 금액'란 기재 금액 부분, ② 2011. 11. 10. 원고 도이치은행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제7목록 기재 법인세분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 다.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원고 한국예탁결제원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제8목록 기재 각 법인세분지방소 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행정소송 금액'란 기재 금액 부분을 각 취소한다.
-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1. 처분의 경위

가. 룩셈부르크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간접투자회사들{SICAV(가변자본형 투자회사, d'investissement capital variable) 또는 SICAF(불변자본형 투자회사, d'investissement capital fix), 이하 '이 사건 SICAV'라 한다}은 국내 상장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주식 또는 채권 등에 투자하면서 원고들을 보관은행(Custodian)으로 선임하여 배당 또는 이자소득을 수취하였다.

- 원고들은 이 사건 SICAV에게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지급된 배당 및 이자(이하 '이 사건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 정부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룩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한 제한세율(배당 15%, 이자 10%)을 적용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 나. (1) 피고 남대문세무서장, 종로세무서장, 영등포세무서장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SICAV는 한·룩 조세조약 제28조상 제한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룩셈부르크 법령에 따른 지주회사(Holding company)에 해당한다.
- "는 이유로,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제한세율로 계산한 기납부세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별지 부과처분 제1, 2, 3목록 기재와 같이 각 법인세 원천징수세액(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하였다.
- (2)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아래와 같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각 기각결정을 받았다.
- 원고들심판청구일심판결정일원고들심판청구일심판결정일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2011.10.5.2013.12.30.홍콩상하이은행 2011.10. 4.2013.12.30.2011.11.2.2014. 1.16.2011.11. 1.2013.12.30.2011.12.2.2013.12.30.2011.12.29.2014. 1.21.2012. 1.3.2014. 1.16.2012. 3.30.2013.12.30.2012.3.29.2013.12.30.2012. 4.30.2013.12.30.2012.4.30.2013.12.30.2013.12.30.도이치은행 2011.10. 5.2013.12.30.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 차타드은행2011.10.5.2013.12.30.2011.12.28.2014. 1.21.2011.11.2.2014. 1.16.한국예탁결제원2012. 4.30.2013.12.30.2011.12.1.2014. 1.16.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2012. 5. 2.2013.12.30.2012. 1.3.2014. 1.16. 제이피모간증권회사2012. 5. 2.2013.12.30.2012. 2.6.2014. 1.16.주식회사 한국외 환은행2012. 9.26.2014. 2.12.2012. 5.4.2013.12.30.2013. 3. 7.2014. 5. 8. 다.
- (1) 한편 피고 남대문세무서장, 종로세무서장, 영등포세무서장이 위와 같이 원천징수세 부과처분을 하자, 피고 서울특별 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 원고들에게 "원천징수할 소득세액이 증액·경정되 었다.
- (2)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아래와 같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각 기각결정을 받았다.
- 원고들심판청구일심판결정일원고심판청구일심판결정일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2012. 3. 30.2012. 6. 26.주식회사 한국 스탠다드차타드은행2012. 2. 28.2012. 7. 26.2012. 5. 7.2012. 8. 20.2012. 5. 7.2012. 7. 26.홍콩상하이은행2012. 4. 2.2012. 7. 10.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2012. 5. 7.2012. 8. 20.2012. 5. 7.2012. 8. 20. 제이피모간증권회사2012. 5. 7.2012. 8. 20.도이치은행2012. 1 2.2012. 3. 30.한국예탁결제원2012. 6. 14.2012. 9. 26.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2013. 3. 26.2013. 6. 28.2012. 6. 26.2012. 9. 18.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 39 내지 48, 65 내지 7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호증, 을라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 (1) 이 사건 SICAV는 한·룩 조세조약상 룩셈부르크 거주자이고, 이 사건 국내원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인 점, 이 사건 SICAV는 1983년에 제정된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회사형 투자펀드로서 지주회사와는 본질적으로 구분되므로, 한·룩 조세조약상 '1929년 법' 및 '1938년 대공령' 또는 이와 유사한 법률에서 의미하는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점, 국내 법인세법상으로도 집합투자기구와 지주회사는 명백히 구분되는 점, 이 사건 SICAV의 근거 법령은 '1983년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법률'이고, 1988년 폐지·제정의 방식으로 법률이 개정되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SICAV는 한·룩 조세조약 체결 이후에 새로 제정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SICAV는 직접투자와 비교할 때 투자자가 부담하는 세금에서 차이가 없도록 조세혜택을 주는 것일 뿐이고, 분산투자를 위해 금융 감독청의 엄격한 규제를 받으므로, 한·룩 조세조약상 혜택을 누리기 위한 목적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없는 점, EU의 행동강령에서도 집합투자기구는 유해조세경쟁(harmful taxation)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SICAV는 룩셈부르크의 '1929년' 법 및 '1938년 대공령'에 의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고, 한·룩 조세조약 서명일 이후 제정된 위 법령과 유사한 법률에 근거한 지주회사로 볼 수 없으므로, 한·룩 조세조약 제28조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2) 이 사건 SICAV와 같은 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은 한·룩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하였고, 원고들은 이를 신뢰하여 한·룩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원천징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원천징수의무불이행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제한세율 적용배제를 규정한 한·룩 조세조약 제28조는 아래와 같다.

제28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룩셈부르크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간접투자회사들{SICAV(가변자본형 투자회사, d'investissement capital variable) 또는 SICAF(불변자본형 투자회사, d'investissement capital fix), 이하 '이 사건 SICAV'라 한다}은 국내 상장주식 또는 채권 등에 투자하면서 원고들을 보관은행(Custodian)으로 선임하여 배당 또는 이자소득을 수취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SICAV에게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지급된 배당 및 이자(이하 '이 사건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 정부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룩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한 제한세율(배당 15%, 이자 10%)을 적용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 나. (1) 피고 남대문세무서장, 종로세무서장, 영등포세무서장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SICAV는 한·룩 조세조약 제28조상 제한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룩셈부르크 법령에 따른 지주회사(Holding company)에 해당한다.
- "는 이유로,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제한세율로 계산한 기납부세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별지 부과처분 제1, 2, 3목록 기재와 같이 각 법인세 원천징수세액(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하였다.
- (2)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아래와 같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각 기각결정을 받았다.
- 원고들심판청구일심판결정일원고들심판청구일심판결정일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2011.10.5.2013.12.30.홍콩상하이은행 2011.10. 4.2013.12.30.2011.11.2.2014. 1.16.2011.11. 1.2013.12.30.2011.12.2.2013.12.30.2011.12.29.2014. 1.21.2012. 1.3.2014. 1.16.2012. 3.30.2013.12.30.2012.3.29.2013.12.30.2012. 4.30.2013.12.30.2012.4.30.2013.12.30.도이치은행 2011.10. 5.2013.12.30.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 차타드은행2011.10.5.2013.12.30.2011.12.28.2014. 1.21.2011.11.2.2014. 1.16.한국예탁결제원2012. 4.30.2013.12.30.2011.12.1.2014. 1.16.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2012. 5. 2.2013.12.30.2012. 1.3.2014. 1.16. 제이피모간증권회사2012. 5. 2.2013.12.30.2012. 2.6.2014. 1.16.주식회사 한국외 환은행2012. 9.26.2014. 2.12.2012. 5.4.2013.12.30.2013. 3. 7.2014. 5. 8. 다.
- (1) 한편 피고 남대문세무서장, 종로세무서장, 영등포세무서장이 위와 같이 원천징수세 부과처분을 하자, 피고 서울특별 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 원고들에게 "원천징수할 소득세액이 증액·경정되었다.
- "는 이유로, 별지 부과처분 제4 내지 8목록 기재와 같이 법인세분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하였다(각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부과처분과 각 법인세분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2)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아래와 같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각 기각결정을 받았다.
- 원고들심판청구일심판결정일원고심판청구일심판결정일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2012. 3. 30.2012. 6. 26.주식회사 한국 스탠다드차타드은행2012. 2. 28.2012. 7. 26.2012. 5. 7.2012. 8. 20.2012. 5. 7.2012. 7. 26.홍콩상하이은행2012. 4. 2.2012. 7. 10.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2012. 5. 7.2012. 8. 20.2012. 8. 20. 제이피모간증권회사2012. 5. 7.2012. 8. 20.도이치은행2012. 1 2.2012. 3. 30.한국예탁결제원2012. 6. 14.2012. 9. 26.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2013. 3. 26.2013. 6. 28.2012. 6. 26.2012. 9. 18.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 39 내지 48, 65 내지 7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호증, 을라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SICAV는 한·룩 조세조약상 룩셈부르크 거주자이고, 이 사건 국내원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인 점, 이 사건 SICAV는 1983년에 제정된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회사형 투자펀드로서 지주회사와는 본질적으로 구분되므로, 한·룩 조세조약상 '1929년 법' 및 '1938년 대공령' 또는 이와 유사한 법률에서 의미하는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점, 국내 법인세법상으로도 집합투자기구와 지주회사는 명백히 구분되는 점, 이 사건 SICAV의 근거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은 '1983년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법률'이고, 1988년 폐지·제정의 방식으로 법률이 개정되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SICAV는 한·룩 조세조약 체결 이후에 새로 제정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SICAV는 직접투자와 비교할 때 투자자가 부담하는 세금에서 차이가 없도록 조세혜택을 주는 것일 뿐이고, 분산투자를 위해 금융감독청의 엄격한 규제를 받으므로, 한·룩 조세조약상 혜택을 누리기 위한 목적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없는 점, EU의행동강령에서도 집합투자기구는 유해조세경쟁(harmful taxation)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SICAV는 룩셈부르크의 '1929년' 법 및 '1938년 대공령'에 의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고, 한·룩 조세조약 서명일 이후 제정된 위 법령과 유사한 법률에 근거한 지주회사로 볼 수 없으므로, 한·룩 조세조약 제28조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이 사건 SICAV와 같은 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은 한·룩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하였고, 원고들은 이를 신뢰하여 한·룩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원천징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원천징수의무불이행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제한세율 적용배제를 규정한 한・룩 조세조약 제28조는 아래와 같다.

제28조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